



세무 및 노동 관련 새로운 법령 문서 및 주요 정책 업데이트

2025년 7월



Grant Thornton Vietnam은 최근 발행되었거나 곧 시행될 예정인 세무 및 외국인 근로자 근로허가 발급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정책들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세무 등록에 관한 재무부 회람 제86/2024/TT-BTC호 개인 납세자 번호 폐지 및 개인 식별번호로 대체 (2025년 2월 6일 시행)

❖ 재무부는 세무 행정을 규정하는 회람 제86/2024/TT-BTC호를 발행하였으며, 이는 2025년 2월 6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회람 제105/2020/TT-BTC호를 대체합니다. 본 회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 당국이 개인, 가구, 가구사업자에게 발급한 기존의 납세자 번호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며, 2025년 7월 1일부터는 「세무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납세자, 세무당국, 관련 기관·조직·개인은 납세자 번호 대신 ‘개인식별번호(PIN)’ 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납세자 번호는 ‘신원확인법’ 에 따라公安부가 발급한 개인식별번호로 대체됩니다.



가구 대표자, 가구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개인식별번호는 해당 가구 또는 사업체의 납세자 번호 대신 사용됩니다.



개인식별번호는 세금 신고, 조정, 부양가족 등록 등 모든 세무 관련 의무에 있어 기존 납세자 번호를 완전히 대체합니다.



2. 법률 제67/2025/QH15호 - 개정 법인세법

2.1. 세율

표준 세율 20%: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

우대 세율 15%: 연간 총수입이 3억 동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 적용

우대 세율 17%: 연간 총수입이 3억 동 초과 5천만 동 이하인 기업에 적용

2. 법률 제67/2025/QH15호 - 개정 법인세법

2.1. 세율

다만, 개정 법인세법 2025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15% 및 17% 우대 세율은 다음의 소득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자본 양도, 지분 양도, 부동산 양도 소득 (단, 제12조 제2항 t호에 따른 사회주택 제외), 투자 프로젝트 양도 소득 (광물 가공 프로젝트 양도 제외), 투자 프로젝트 참여 권리 양도, 광물 탐사·채굴·가공 권리 양도, 베트남 외 지역에서의 사업 활동 소득

2

석유 및 가스 탐사, 조사, 추출 소득과 기타 희귀 자원 및 광물의 탐사 및 채굴 소득

3

특별소비세 적용 대상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거래 소득 (단, 자동차, 항공기, 요트의 조립/제조 및 석유정제·석유화학 프로젝트는 예외)

4

계열사 또는 관련 관계 기업 중 우대 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

2. 법률 제67/2025/QH15호 - 개정 법인세법

2.2. 법인세 우대 대상 업종 추가

개정 법인세법 2025 제12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규 업종을 법인세 우대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1

사이버 보안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이버 보안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디지털 기술 산업법에 따른 핵심 디지털 기술 제품 및 서비스, 전자 장비 생산, 반도체 칩 제품의 연구개발(R&D), 설계, 패키징, 테스트,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건설

2

국방 및 안보 관련 제품 생산, 산업 동원 제품 제조, 관련 법령에 따른 핵심 화학 및 기계 제품 생산

3

자동차 조립 및 생산, 기타 디지털 기술 제품 제조

4

중소기업(SME) 지원을 위한 기술 인프라 투자 및 운영, 중소기업 인큐베이팅 시설,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공동 사무공간(co-working space) (중소기업 지원법에 따라 규정)

2. 법률 제67/2025/QH15호 - 개정 법인세법

2.3. 세제 혜택을 받는 생산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 자본 요건 변경

세제 혜택 대상 생산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 자본 요건이 12조 동 (VND 12,000억)으로 상향되며, 해당 자본은 5년 이내에 집행되어야 하며, 「투자법」에 따른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을 적용해야 합니다.

2.4. 지역 기반 세제 혜택 조정

일반 산업단지에는 더 이상 지역 기반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경제구역, 첨단기술구역, 첨단농업구역, 디지털기술 집중구역 등은 기존과 같이 지역 기반 세제 혜택을 계속 적용받습니다.





2. 법률 제67/2025/QH15호 - 개정 법인세법

2.5.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기술 플랫폼 관련 보완 지침

법률 제67호는 적용 대상을 확장하여, 베트남 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기업이라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디지털 기술 플랫폼을 통해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의 정의도 확장되어, 해당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2.6.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양도에 대한 과세 방식 변경

기존에는 외국 기업이 주식회사 지분이나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67호는 ‘소득’ 기준이 아닌 ‘매출’ 기준으로 과세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출 기준 세율은 추후 정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즉,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간접 양도(예: 중간 회사 통한 지분 양도)도 예외 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2. 법률 제67/2025/QH15호 - 개정 법인세법

2.7. 과세소득에 대한 새로운 규정

IIR(최소 과세 소득)에 따라 추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업은, 해당 금액을 베트남 내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8.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 공제 항목

-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로 추가 공제
- 정부가 규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수익과 직접 연관되지 않더라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공공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며 기업 운영에도 기여하는 비용
- 탄소중립 및 넷제로(net-zero) 목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환경오염 저감 관련 비용, 단 기업의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되어야 함





2. 법률 제67/2025/QH15호 - 개정 법인세법

2.9. 추가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 항목

1

전문 법령상 요건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

2

비금융기관으로부터의 사업 목적 차입금에 대해 민법상 한도를 초과한 이자 비용

3

법에서는 '기타 비용' 항목을 도입했으나,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음

3. 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 및 시행령 제181/2025/NĐ-CP호, 회람 제69/2025/TT-BTC호 (2025년 7월 1일 시행)

3.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및 세율 조정

- 과세 대상 전환 (5% 세율 적용):
단순 가공 또는 미가공 상태의 조림 제품, 가축, 양식 수산물, 어획물 등으로, 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구매한 후 다른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재판매하는 경우
- 면세 → 5% 과세로 전환:
비료, 해양 수역에서 운항하는 어선, 정부가 정한 농업용 특수 기계 및 장비 등
- 5% → 10% 세율 상향:
미가공 임산물, 설탕 및 부산물, 일부 교육·연구·실험용 특수 장비, 전시·공연·영화 제작·수입·배급·상영 활동 등 (전통 민속 예술 제외)
- 정부 고시 품목에 따라 면세 대상에 추가되는 수출 품목:
가공되지 않거나 다른 제품으로 가공된 자원 및 광물로, 원자재 및 광물 수출을 지양하는 국가 정책에 부합
-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증권 보관 서비스, 증권거래소 및 거래소의 시장 조직 서비스, 기타 증권 관련 사업 활동 등



3. 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 및 시행령 제181/2025/NĐ-CP호, 회람 제69/2025/TT-BTC호 (2025년 7월 1일 시행)

3.2. 세액공제 요건 변경 (시행령 제181호)

- 비현금 결제 증빙 요건 금액 하향:
VAT 포함 500만 동 이상인 재화·서비스 구매(수입 포함)는 비현금 결제 증빙 필수
(결제 방식은 시행령 제52/2024/NĐ-CP에 따름)
- 하루에 여러 번 구매하더라도 총액이 500만 동을 초과하면 비현금 결제 증빙 필요

3.3. 비관세 구역에 제공되는 재화·서비스의 0% 세율 적용 요건 변경

비관세 구역 내 기관에 제공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소비되며 수출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0% 세율 적용

3. 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 및 시행령 제181/2025/NĐ-CP호, 회람 제69/2025/TT-BTC호 (2025년 7월 1일 시행)

3.4.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변경



5% 세율 적용 업종만 영위하는 사업자가 12개월(또는 연속 4분기) 동안 공제되지 않은 VAT가 3억 동 이상 발생할 경우 환급 가능
(환급 세액 계산 방법은 회람 제69/2025/TT-BTC 부속서 III에 명시됨)



환급 불가 항목 추가:
외국에서 수입 후, 베트남에 들여온 뒤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재화
(단, 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원자재는 제외)



3. 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 및 시행령 제181/2025/NĐ-CP호, 회람 제69/2025/TT-BTC호 (2025년 7월 1일 시행)

3.5. VAT 면세 대상 판정 관련 서류 요건 보완 (회람 제69/2025/TT-BTC호)

가축 종자 제품: 제조업체의 기준 공표
및 가축법에 따른 관련 서류

수입 신문, 잡지, 소식지, 특별 간행물,
정치 서적, 교과서, 교재, 법률 문서 등:
출판법에 따라 유관기관이 발급한
'출판물 수입 확인서' 필요

인도적 또는 무상 원조를 위한
외국·국제기구 대상 판매 재화·서비스:
시행령 제181/2025/NĐ-CP 제4조 제11항
b호에 따른 서면 문서 필요

산업재산권 (특허, 디자인, 배치설계,
상표 등) 양도:
지식재산법에 따라 발급된 보호증서
또는 국제조약에 따른 등록 인정 문서
필요

식물 품종 지식재산권 양도:
보호증서 및 법률에 따른 권리 양도
계약서 필요

재난 예방·복구를 위한 기부/후원 수입
물품:
수령 기관의 기부 승인 문서 필요

3. 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 및 시행령 제181/2025/NĐ-CP호, 회람 제69/2025/TT-BTC호 (2025년 7월 1일 시행)

3.6. 고정 비율 과세 대상 품목군에 대한 세율 명시 (회람 제69호 부속서 I 포함)

3.7.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액공제·환급 관련 금지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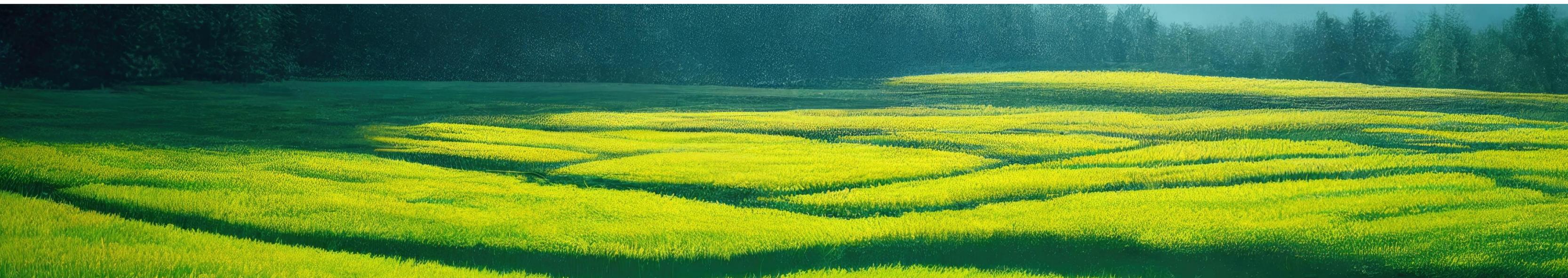
- 세금계산서의 매매 및 알선
- 허위 거래 생성
- 불법 세금계산서 또는 문서 사용
-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세무당국에 미전송
- 세금계산서 시스템 위·변조 또는 부정사용
- 세금계산서 관련 뇌물 제공·수수 또는 중개
- 세무공무원, 기관, 수입업자 및 기업 간의 담합·은폐·불법 연계



4. 시행령 제128/2025/NĐ-CP호 - 내부 행정 분야에서의 국가 관리 권한 위임 및 분권화 규정

정부는 시행령 제128/2025/NĐ-CP호를 발행하였으며,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시행령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허가 발급 절차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7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허가 발급 권한이 노동보훈사회부(MOLISA)에서 성·시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People's Committee Chairperson)으로 이관됩니다.
- 이 변경은 노동 수요 승인, 근로허가 면제 확인, 신규·재발급·연장·취소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시행령 128호는 행정 양식도 대폭 수정하여, 예전 양식에 사용된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고용국 (Department of Employment)” 이라는 용어를 “성/시 인민위원회” 또는 “내무국 (Department of Home Affairs)”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행정 양식은 2025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됩니다.
- 이번 분권화 조치는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중앙기관의 부담을 줄이며, 기업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Contact

Please study the newly issued regulations and review the internal compliance procedures in order to comply with the regulations on customs tax as well as reduce errors in the process of filing and preparing documents that could lead to additional tax obligations or administrative penalty.

Please contact the experts of Grant Thornton Vietnam for in-depth advice if you have any inquirie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ax and customs compliance

Please visit our **Tax Hub** to view more information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Nghia Do Ward,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grantthornton.com.vn



Hoang Khoi

Senior Partner, National Head of Tax Services

D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Bui Kim Ngan

Tax Director

D +84 24 3850 1716

E ngan.bui@vn.gt.com



Hoang Viet Dung

Tax Director

D +84 24 3850 1687

E dung.hoang@vn.gt.com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Thanh My Tay Ward,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Valerie – Teo Liang Tuan

Tax Partner

D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Nguyen Thu Phuong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7

E thuphuong.nguyen@vn.gt.com



Dang Hai Ha My

Tax Director

D +84 28 3910 9241

E my.dang@vn.gt.com



Lac Boi Tho

Tax Director

D +84 28 3910 9240

E tho.lac@vn.gt.com



Do Vu Bao Khanh

Tax and Transfer Pricing Director

D +84 28 3910 9277

E khanh.do@vn.gt.com

© 2025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GTIL and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s acts or omissions.